

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5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5월 12일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이재일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 부칙 제1항(시행일)의 조문을 법령이나 조례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문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부칙 제1항(시행일)의 조문내용중 “실시한다”라는 조문을 법령이나 조례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“시행한다”로 조문을 수정.

과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과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제1항(시행일)중 “실시한다”를 “시행한다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수 정 안
<p>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<u>실시</u> <u>한다.</u></p>	<p>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<u>시행</u> <u>한다.</u></p>